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9. 10. 9.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0월 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10월 1일
- 다. 상정일자 : 제65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 ('99.10. 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교통지도과장 김 성 구

가. 개정이유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도록 하는 내용 등을 신설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 내지 폐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노상주차장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 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대상에 "주차요금 사전 납부대상 차량으로서 사전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와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차요금 사전납부 거부 및 1회 이용시간 초과주차의 경우에는 관리방법의 개선, 가산금부과 등으로 보완 조치하고 주차장 이용 거절대상에서는 제외함. (안 제3조)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위탁관리수수료율을 주차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 조정함.
(안 제4조 제2항)
-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나 긴급자동차의 진입 없이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6m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의2)
-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의3)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 사전징수대상에서 "타 시·도 등록자동차"를 제외시켜 서울시내 등록차량과의 차별대우를 없앰. (안 제6조 제2항 제1호)
- 노상주차장의 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할 수 있는 차종을 모든 차량으로 하며,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만 1시간 주차시간 한도를 폐지하고,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를 폐지도록 함.
(안 제8조 제4항, 제5항)
-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제한시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주차장에 게시도록 한 규정은 주차장법 제10조와 중복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함. (안 제9조)
-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독관서에 제출하는 관리규정에 명기하고 주차시간 단위에 있어서 최초단위 30분, 추가단위 10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법에서 민영주차장의 관리규정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주차요금 및 주차시간 단위를 주차장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건축법시행령 및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함. (안 제15조)
 - (1)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에서 "근린 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함.
 - (2) 주차장설치제한지역내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에서 "근린 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업무시설"로 함.

* 건축법시행령 및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의 용도구분에 있어 근린공공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통합됨.

-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신고 및 일반이용폐지신고규정등 불필요한 규제성 관련조문을 삭제함.
(안 제16조 내지 안 제18조)
-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에서 "200미터"로, 도보거리 "150미터"에서 "300미터"로 각각 그 범위를 확장함. (안 제19조)
-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도록 하고,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도록 함. (안 제24조의2 내지 안 제24조의4)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 내지 폐지하고 주차장법과 건축법령 등에서 관련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고,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장관리자가 주차거부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인 안 제3조제6호, 제7호의 규정과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만 주차할 수 있었던 타시·도 등록자동차에 관한 규정 및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와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었던 안 제8조제5항의 규정등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각각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에는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차요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음.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너비 6m미만인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2에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정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3에 주택가도로의 주차장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주차장을 확보할 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의2에 보조금의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과 보조의 방법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안 제24조의3과 안제24조의4에 각각 신설하였음.
- 안 제16조,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의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였던 주차장법 제19조의3의 규정이 지난 '99. 2. 8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각각 삭제하였으며, 부칙 안 제2항에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규정으로 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용자대상이 노외주차장만 해당되었으나 부설주차장도 해당 될 수 있도록 개정하므로써 안 제22조 및 안 제24조의2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1999. 9.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주차장법등 관련법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토록 하는 내용 등을 신설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 내지 폐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노상주차장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 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대상에 “주차요금 사전 납부대상 차량으로서 사전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와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차요금 사전납부 거부 및 1회 이용시간 초과주차의 경우에는 관리방법의 개선, 가산금부과 등으로 보완조치하고 주차장 이용 거절대상에 서는 제외함.(안 제3조)
- 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위탁관리수수료율을 주차장여건에 따라 탄력적

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 조정함.(안 제4조제2항)

라.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나 긴급자동차의 진입 없이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6m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마.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바.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 사전징수대상에서 “타 시·도 등록자동차”를 제외시켜 서울시내 등록차량과의 차별대우를 없애.(안 제6조제2항제1호)

사. 노상주차장의 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할 수 있는 차종을 모든 차량으로 하며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만 1시간 주차시간 한도를 폐지하고,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를 폐지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제5항)

아.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제한시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주차장에 게시도록 한 규정은 주차장법 제10조와 중복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9조)

자.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독관서에 제출하는 관리규정에 명기하고 주차시간 단위에 있어서 최초단위 30분, 추가단위 10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법에서 민영주차장의 관리규정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주차요금 및 주차시간 단위를 주차장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건축법시행령 및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함.(안 제15조)

(1)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

류에서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함.

(2) 주차장설치제한지역내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에서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로 함.

※ 건축법시행령 및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의 용도구분에 있어 근린공공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통합됨.

카.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 및 일반이용폐지신고규정등 불필요한 규정성 관련조문을 삭제함.(안 제16조 내지 안 제18조)

타.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에서 “200미터”로, 도보거리 “150미터”에서 “300미터”로 각각 그 범위를 확장함.(안 제19조)

파.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토록 하고,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토록 함.(안 제24조의 2 내지 안 제24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1999. 2. 8 법률 제5902호)

주차장법시행령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28호)

주차장법시행규칙 (1999. 3. 12 건설교통부령 제177호)

건축법 (1999. 2. 8 법률 제5895호)

- 나. 규제여부 : 1999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필
- 다. 예산조치 : 별도예산 조치 필요
- 라. 합의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및 기획예산과와 합의
- 마. 입법예고결과 : 별다른 의견 제출 없음
-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당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중 본문과 동조동항중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각호의 경우에 부과 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 한다.

5.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제3조중 제목과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제6호 및 동조중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4조제2항중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30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6m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주택가도로의 주차장관리)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제5항을 삭제한다.

④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를 “공영노외주차장의 개인택시·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으로 한다.

① 제6조의 규정은 공영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중 제1항 및 동조중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그 표지 상단에 서울특별시마포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 의한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로 한다.

②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대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

③1급지 지역중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한다.

제16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중 “100미터”를 “200미터”로 하고, “150미터”를 “300미터”로 한다.

제5장 제목 “융자”를 “보조 및 융자”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융자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서울 특별시 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 이하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한다)의 예산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자

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제23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응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보조금 지원대상)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6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조되는 보조금 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의3(보조의 방법등)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주차장 설치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보조조건, 절차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사후에 다른 용도나 임의 폐쇄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경우

② 보조금을 수령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보조원금에 대하여 보조 조건에서 정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1] 비고 제12호중 “할인”을 “할인·할증 등”으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시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제8조제6항 관련)

구 분	최초1시간	1시간초과	월정기권
“가”지구	1,500원	15분당 500원	
“나”지구	1,200원	15분당 400원	50,000원
“다”지구	1,000원	15분당 300원	40,000원

- 비 고 -

지구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가”지구 : 주요간선도로와 인접하여 있으면서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

나.“나”지구 : 근린생활시설 및 도·소매업 밀집지역으로 물류유통이 활발한 지역

다.“다”지구 : 주거 및 공업기능이 혼재된 지역

별지 제1호서식중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비 고 -

구 分	재 료	색 채	
		바 탕	글씨(고딕)
공영주차장	알루미늄 및 철판	녹 색	흰 색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보조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노외주차장” 을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u></p> <p><u>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u></p> <p>1.~4. (생략)</p> <p>5. <u>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u></p> <p>6.~9. (생략)</p>	<p><u>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중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당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u></p> <p>1.~4. (현행과 같음)</p> <p>5. <u>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u></p> <p>6.~9. (현행과 같음)</p>
<p><u>제3조(주차거부금지)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u></p> <p>1.~5. (생략)</p>	<p><u>제3조(주차거부금지)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u></p> <p>1.~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u>6.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주 차요금납부를 거절하는 경우</u>	〈삭제〉
<u>7.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 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 차하고 있는 경우</u>	〈삭제〉
<p><u>제4조(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 관리) ①(생략)</u></p> <p><u>②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u>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p>	<p><u>제4조(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 관리) ①(현행과 같음)</u></p> <p>②-----</p> <p>-----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p> <p>-----</p> <p>-----</p> <p>-----</p> <p>-----</p> <p>-----</p> <p>-----.</p>
〈신설〉	<p><u>제5조의 2(노상주차장의 설치 기준)</u></p> <p><u>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6m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u>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p>

현 행	개 정 안
	<p><u>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u> <u>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u> <u>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당해지역</u> <u>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u> <u>되는 경우</u></p>
<u><신설></u>	<u>제5조의3(주택가도로의 주차장관리)</u> <u>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u> <u>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u> <u>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u> <u>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u> <u>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단위 또는</u> <u>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u> <u>할 수 있다.</u>
<u>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방법)</u>	<u>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u>
①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 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 수할 수 있다. 1. 타시·도 등록자동차 2.~3. (생략) ③ (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 ----- ----- -----. <u><삭제></u>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하역주차구간)①~③ (생 략)</p> <p>④ <u>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u></p> <p>⑤ <u>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다.</u></p> <p>⑥ (생 략)</p>	<p>제8조(하역주차구간)①~③(현행과 같음)</p> <p>④ <u>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u></p> <p><u><삭제></u></p> <p>⑥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용의 제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사용제한개시일 전부터 해제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p>	<p><u><삭제></u></p>
<p>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p>	<p>제12조(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등) ① 제6조의 규정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③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 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4·5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1의 노외 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퍼센트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공영노외주차장의 개인택시·개별 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p> <p>-----</p>
<p>제13조(주차시간 단위) 시행규칙 제8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단위는 최초단위를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0분단위로 계산한다.</p>	<p>〈삭 제〉</p>
<p>제14조(주차장의 표지)①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공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 상단에 서울특별시마포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제14조(주차장의 표지)①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그 표지 상단에 서울특별시마포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야 한다.</p> <p>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안내표지에 신고번호, 관리자성명 및 주차제한차량 등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③ (생략)</p> <p><u>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u>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 의한 이용자 편의시설은 균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균린공공시설로 한다.</p> <p>②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균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균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p>	<p><u>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u>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 의한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균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로 한다.</p> <p>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균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p> <p>③ 1급지 지역중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균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제16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u></p> <p>①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내의 공지로서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p> <p>②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삭 제〉</p>
<p><u>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①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물의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1. 주차시설 배치도</p> <p>2. 인근300미터이내의 도로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축척 1200분의 1 이상일 것)</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받은날로 부터 5일이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u>제18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u>	<u><삭제></u>
<p>등)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후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일반이용 중지·폐지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u>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영 제7조</u></p> <p>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u>100미터</u>이내 또는 도보거리 <u>150미터</u> 이내로 한다.</p>	<p><u>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u></p> <p>-----</p> <p>-----</p> <p>-----</p> <p>----- <u>200미터</u> -----</p> <p>----- <u>300미터</u> -----</p>
<p><u>제5장 읍자</u></p> <p><u>제22조 (읍자의 대상)법 제21조의2제6항</u>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읍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p>	<p><u>제5장 보조 및 읍자</u></p> <p><u>제22조(읍자의 대상)법 제21조의2제6항</u>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의 예산 범위내에서 읍자를 받을 수</p>

현 행	개 정 안
<p>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p>	<p>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자 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p>제23조(융자의 방법) ①~② (생략)</p> <p>③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3조(융자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24조의2(보조금 지원대상)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 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6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조되는 보조금 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p>

현 행	개 정 안
	<p>의 범위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u>제24조의3(보조의 방법등)</u>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 로 정하는 서류를 주차장 설치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보조 조건, 절차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 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 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u>〈신설〉</u>	<p><u>제24조의4(보조금의 반환)</u>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없이 구청 장에게 반환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받아 설치한 주차 장을 사후에 다른 용도나 임의 폐쇄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경우 <p>② 보조금을 수령 받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p>

현 행	개 정 안
	<p>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보조워금에 대하여 보조조건에서 정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p>
<p>[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제1항 관련) 12.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	<p>[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제1항 관련) 12. -----할인·할증 등----- ----- -----</p>
<p><u>〈신설〉</u></p>	<p>13.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시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별표2]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제8조제6항 관련)			[별표2]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제8조제6항 관련)		
급 지	최초1시간	1시간 초과	구 분	최초1시간	1시간초과
1급지	1,000원	15분당 1,000원	"가"지구	1,500원	15분당 500원
2급지	500원	15분당 500원	"나"지구	1,200원	15분당 400원
			"다"지구	1,000원	15분당 300원
					40,000원

- 비 고 -

지구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가"지구: 주요간선도로와 인접하여 있으면서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

나."나"지구: 균린생활시설 및 도·소매업 밀집 지역으로 물류유통이 활발한 지역

다."다"지구: 주거 및 공업기능이 혼재된 지역

<별지 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10조제2항 관련)

(생략)

- 비 고 -

구 分	재 료	색 채	
		바 탕	글씨 (고딕)
공영주차장	알루미늄 및 철판	녹색 청색	화색 회색
민영주차장			

<별지 제5호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부설주차장일반이용신고서 및 부설주차장일반 이용신고필증

<별지 제6호서식> (제18조제1항 관련)

부설주차장일반이용증지·폐지신고서 및 부설주차장일반이용증지·폐지신고필증

구 分	재 료	색 채	
		바 탕	글씨 (고딕)
공영주차장	알루미늄 및 철판	화색 회색	녹색 청색

<삭 제>**<삭 제>**